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

가. 개정 이유

- 국내시장 교란 및 산업기반 붕괴 우려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'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'24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찌쌀,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 기존 조정관세율 적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 등의 수입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·어가 및 관련 산업 등 보호 효과 기대